

# 실적평가금 지급규칙

제 정 2007. 07. 16.  
 전문개정 2008. 11. 06.  
 개 정 2012. 06. 08.  
 개 정 2015. 04. 30.  
 개 정 2018. 10. 31.  
 개 정 2019. 06. 25.  
 개 정 2019. 11. 18.  
 개 정 2023. 09. 08.  
 개 정 2023. 10. 1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실적평가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임·직원의 실적 평가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**제3조(구분과 지급대상)**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실적평가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직원실적평가금은 근무실적평가 및 수습직원 평가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을 말한다. <개정 2023.9.8.>
2. 기관실적평가금은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년도 임기인 전·현직 원장에게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을 말한다. <개정 2019.6.25.>

② 제1항의 실적평가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실적평가금 지급대상 <개정 2012.6.8., 2015.4.30., 2018.10.31., 2019.6.25., 2023.9.8., 개정 2023.10.13>

구분		지급근거	
실적평가금	대상	경영실적평가금	개인실적평가금
직원실적평가금	직원*	경영평가 + 근무실적평가	근무실적평가
	수습**	경영평가 + 수습직원평가	해당없음
기관실적평가금	원장	경영평가	해당없음

\*직원 : 연구본부장, 연구직, 정보직, 관리직, 전문직, 공무원(청소원)

\*\*수습 :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직원

## 실적평가금 지급규칙

2. 직원실적평가금은 직원평가규칙에 의거,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다. 다만 연구본부장의 경우 연구실적 및 직무관련 실적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하며 원장은 평가 비대상자 가운데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8., 2015.4.30., 2018.10.31., 2023.10.13.>

3.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 10조에 의거한 근무실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자(정년퇴직) 당해에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은 전환전 직급 평균지급액을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19.6.25., 개정2019.11.18.>

구분	직원실적평가금 유형별 근무기간 환산	
	개인평가성과금(당해년도)	경영평가성과금(전년도)
산식	평가기간 근무일 / 근무평가 대상기간 (전년도 11월 ~ 당해년도 10월)	전년도 근무기간 / 경영평가 대상기간 (전년도 1월 ~ 12월)

## 제2장 실적평가금 지급

**제4조(지급방법)** ①제3조의 규칙에 의거 실적평가금은 평가기준일 현재

지급대상자의 직별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되, 기준액의 산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②실적평가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6.8., 2015.4.30., 2018.10.31., 2019.6.25., 2019.11.18., 2023.9.8., 2023.10.13>

구분	직원실적평가금			기관실적평가금	
	연구직, 정보직, 관리직, 전문직, 공무원(청소원)	연구본부장(보직자)	수습기간 소급임용	원장(전·현직)	
	경영실적평가금 + 개인실적평가금		경영실적평가금	경영실적평가금	
지급기준	근무실적평가 등급으로 정함		연구실적 및 직무관련 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함	경영평가결과 및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함	
	S(가)등급	(기준액) × 1.25			임용 직급의 평균지급액 × 기준율* × 기간비례**
	A(나)등급	(기준액) × (1.25~1)			
	B(다)등급	(기준액) × (1~0.75)			
C(라)등급	(기준액) × 0.75				

\*기준율 = 수습직원 평가점수, \*\*기간비례 = 근무 / 경영평가 대상기간

**제5조(지급일)** 실적평가금의 지급일은 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실적평가금 지급규칙

**부 칙** <2008.11.6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2.6.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5.4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8.10.3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9.6.25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9.11.1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23.9.8.>

1.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습기간 소급임용 직원의 평균임금(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행정해석(고용노동부 2020.3.30))에 해당하는 경영실적평가금 지급은 시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2019년 경영실적성과급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2.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실적평가금 지급규칙

**부 칙** <2023.10.1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